

전북 남원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점심 시간마다 식사 준비와 빨래를 시키는 등 온갖 잡질을 일삼은 가해 임직원들이 피해 여직원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4년 전 새마을금고 퇴사 직원 A씨가 해당 금고 전직 이사장 B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장은 “전직 이사장 B씨는 A씨에게 8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또 다른 고고된 전직 지점장 2명과 지점 상무이사 등 3명도 각각 200만~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잡질 비위에 연루된 또 다른 직원 1명에 대한 A씨의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8월 금고에 참고 업무 담당 직원으로 입사했다.

입사 이듬해 A씨는 상사의 남자화장실 수건 세탁 지시를 거부했다가 동료 직원들과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당시 이사장이던 B씨는 ‘상사에 알맞게 섬기는 방법을 채택해 섬겨야 한다’, ‘꾸지람 들을 때에는 순종하는 자세로 냉정히 반성할 줄 알아야 한다’ 등이 담긴 문서를 직원들에게 배포했다.

금고 지점장들도 A씨와의 면담 과정에서 ‘상처 받으면서 뭐 하러 다니느냐. 나가

도 된다’ 등의 말을 서슴치 않고 업무 수첩으로 책상을 치는 등 잡질을 했다.

A씨에게 점심 식사 준비를 지시해 놓고선 ‘밥을 왜 이렇게 질게 했냐며 나무랐다. 수건 세탁과 청소 등 잡일을 지시하고 실수하면 시발서 작성을 요구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사장 B씨는 본점으로 발령받은 A씨가 지점장으로부터 당한 폭언 피해 내용이 담긴 시발서를 제출하자, 임의로 삭제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또 B씨는 A씨가 가정사 탓에 불참했다고 한 회식 참석을 강요하고, 회식 자리에서는 간식세를 세 차례에 걸쳐 종용하며 동료들 앞에서 망신을 주기도 했다. A씨를 비롯한 금고 직원들에게 출자금 납부를 강요하기도 했다.

광주지방법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은 A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했고, B씨 등 가해 임직원들은 이사회에서 징계 처분을 받았다.

재판장은 “당시 이사장이었던 B씨와 지위상 우위가 있는 지점장 2명은 A씨에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괴롭힘 행위를 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받았음에도 조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응·방치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승현근 기자

에서 B씨 역시 A씨가 미리 준비해 둔 흉기를 집어 찔렀고, A씨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로 따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1심은 “엄정 처벌이 필요하지만 A씨 역시 B씨의 흉기에 찔리는 피해를 입은 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서로 합의해 서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범행에 따른 상해가 아주 무거운 정도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오권철 기자

☎062-525-9775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